

복수전공이수규정

(폐지 2018.12.27.)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칙 제35조에 의거 복수전공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범위 및 선발기준)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과(전공)는 복수전공제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유아교육과, 간호학과, 군사학과는 제외한다.(개정 2010.3.1, 2013.12.17)

② 학과(전공)의 특성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발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

③ 복수전공자의 선발기준은 총 평점평균이 높은자 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,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대학(학부)내 신청자, 총 취득학점이 많은자 순으로 선발한다

제3조(자격) 복수전공은 1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. (개정 2010.03.01., 2017.05.12., 2018.07.23.)

제4조(신청시기 및 절차) ① 복수전공이수지원자는 매학기초 복수전공이수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교육혁신본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8.07.23.) ② 복수전공이수허가 결정은 매학기 수강신청 전에 확정한다.

제5조(교과이수) ① 복수전공신청자의 소속학과(전공) 및 복수전공학과(전공)의 이수학점은 교육과정이수표 및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고, 각 학과(전공)별 졸업종합시험(논문 등)을 통과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12.17.)

② 동일 교과목을 주전공과 복수전공 교과목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. (개정 2010.03.01., 2017.05.12.)

제6조(학위수여) ① 복수전공이수자가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학위증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. 단, 소속학과(전공)의 졸업소요학점에 도달한 자가 복수전공을 이수 중일 때에는 복수전공이수 소요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학위수여를 유보할 수 있다.

②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여도 소속학과(전공)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때에는 학위수여를 할 수 없다.

제7조(복수전공의 포기) 복수전공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최종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복수전공포기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 복수전공이수를 포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복수전공학과(전공)에서 취득한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 단, 복수전공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이 21학점 이상인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7.05.12.)

제8조(학적부의 기재) 복수전공이수자에 대하여는 학적부에 그 사실을 등재하여야 한다.

【전문개정 2006.3.1.】

부 칙

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개정규정은 1997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단, 1996학년도 입학생과 1997학년도 입학생의 제2전공의 이수는 1997학년도 교육과정상의 이수기준에 의하여 이수하며, 학부기초는 전공기초 과목을, 전공필수는 1998학년도 교육과정상에 지정된 필수과목을 이수하면 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개정규정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1996학년도 입학생과 1997학년도 입학생의 복수전공 신청자격은 최소 49학점 이상(로봇시스템공학과, 정보통신공학과, 컴퓨터공학과, 멀티미디어공학과, 경영정보학과, 매스컴학과, 유통경영학과) 또는 53학점 이상(컴퓨터그래픽학과, 패션디자인학과, 건축학과, 건축공학과)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 3.0이상인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본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3조제1항 등의 복수전공시 제1, 2전공의 이수학점 상향은 2002학번 이전의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폐지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(개정 2018.07.23.)

복수전공 이수 신청서

신청 자 기 재 란 ①	학 번		대학(학부)		학과(전공)		(주.야)	
	성 명				학년			
	연락처	집) _____ 휴대폰) _____ E-mail) _____						
	희망학과	대학(학부)			학과(전공) (주.야)			
	학적사항	학 적 상 태	재학 <input type="checkbox"/> 휴학 <input type="checkbox"/> (학년도 _____ 학기 복학예정)					
		이 수 학 점	학 점	평점평균	/4.5			
		입 학 구 분	정시 <input type="checkbox"/> 편입 <input type="checkbox"/> 산업체위탁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
	상기 본인은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
	본 인				(인) 복수전공학(부)장			
제출일자	년 월 일			동명대학교 총장 귀하				

※ 절차 및 기타 유의사항은 해당 학기 "복수전공" 관련 공고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복수전공이수 신청서 접수증 - 학생보관용 -							
신청자 기재란②	학번		학과(전공)		(주.야)	성명	
접 수 일 자	년 월 일			접 수 자		(인)	

■ 꼭 읽어보세요.■

복수전공 이수 허가 사항은 _____ 년 월 _____ 일 이후 본 대학교 홈페이지 "공지사항"에서 확인하세요.
(www.tu.ac.kr)

동명대학교

[별지 제2호 서식] (개정 2018.07.23.)

복수전공 포기 신청서

신청 자 기 재 란 ①	학 번		대학(학부)		학과(전공)	(주·야)	
	성 명				학년		
	연락처	집) _____ 휴대폰) _____ E-mail) _____					
	복수전공 학과	대학(학부)		학과(전공) (주·야)			
	사유						
	위와 같은 사유로 복수전공이수를 포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	본 인			(인)	복수전공학과(부)장	(인)	
	제출일자	년 월 일		동명대학교 총장 귀하			

- ※ 복수전공 이수 포기는 수강신청기간에 가능하며 이미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됩니다.
- ※ 절차 및 기타사항은 해당학기 “복수전공” 관련 공고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복수전공이수 포기 신청서 접수증 - 학생보관용 -						
신청자 기재란②	학번		학과(전공)		성명	
접수 일자	년 월 일		접수 자	(인)		

동명대학교